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 일 시 : 2023. 11. 28.(화) 14:00 ~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대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현상변경	5
2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6
3	사적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9
4	사적 「서울 독립문」 등 2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12
5	「속초 동명동 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0
6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2

【검토사항】

7	「안국동 별궁 후원 전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34
8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35
9	「디젤동차 672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36
10	「안춘천 철교 상판 구조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37
11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舊)」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38
12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4」 보수정비 검토	39

【보고사항】

13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등록(면적) 정정 고시 보고	41
----	--	----

심 의 사 항

1.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시 관악구 소재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보호구역에 전시물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보호구역에 전시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시립미술관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77.11.22. 지정)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9-13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9-13
 - ※ 문화재보호구역 내임
 - 신청내용 : 조각작품 3점 야외정원 설치
 - 목적 : 작가 '정현' 개인전 「덩어리」
 - 기간 : '23.12.20.~'24.03.17. (설치 2023.12.11. / 전시 종료 후 원상복구)
 - 설치물 : 지반 굴착 후 콘크리트기초판(너비 2m) 매립, 제작된 작품(알루미늄 재질, 바닥 기초플레이트 너비 1.5m)을 기초에 앙카로 고정
 - 작품 1 : 높이 3.5m, 무게 450kg(플레이트 포함)
 - 작품 2 : 높이 6m, 무게 500kg(플레이트 포함)
 - 작품 3 : 높이 2.5m, 무게 400kg(플레이트 포함)

2.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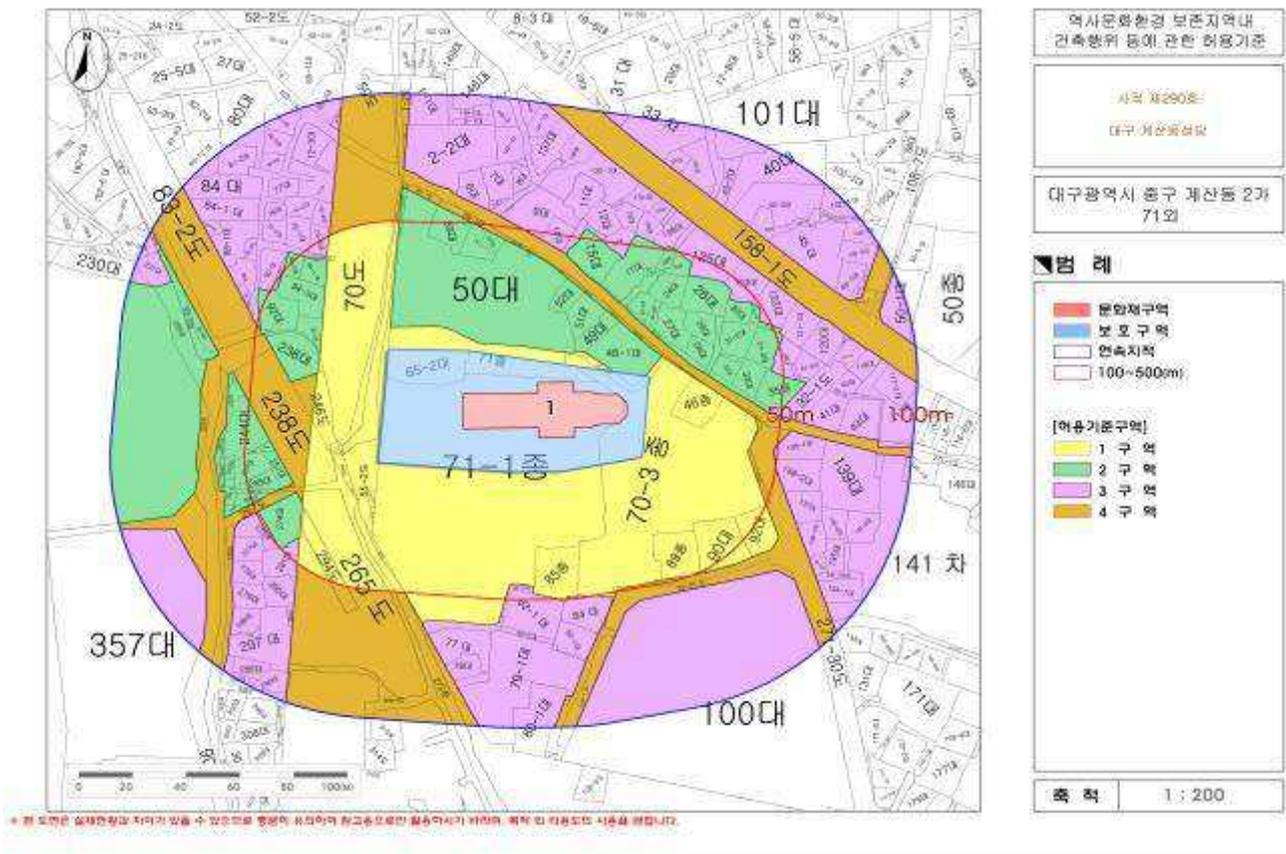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대구광역시 중구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 (3) 조정 취지
 - 문화재청훈령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2015.6.30.시행) 제4조 별표5에서 허용기준 작성범위로 100m로 고시되었던 내용이 이후 개정에서 삭제되며 허용기준을 재고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 시행
 -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2022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시행(보존정책과)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거쳐 내용반영
- (4) 세부내용
 - 주요 변경사항
 - 허용기준 마련 범위 확대(100m → 200m)
 -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로 변경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건축법 시행령)
 - 태양에너지 설비 조항 신설
 - '개별심의'에서 '개별검토'로 용어 변경
 - 그 외 법률명 명확화 등 용어 정리
 - 향후 GIS 등재 시 구역 범주화: 1구역(개별검토), 2구역(고도제한), 3구역(타법처리)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 심의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30m 이하
제4구역	대구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사적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독립대구병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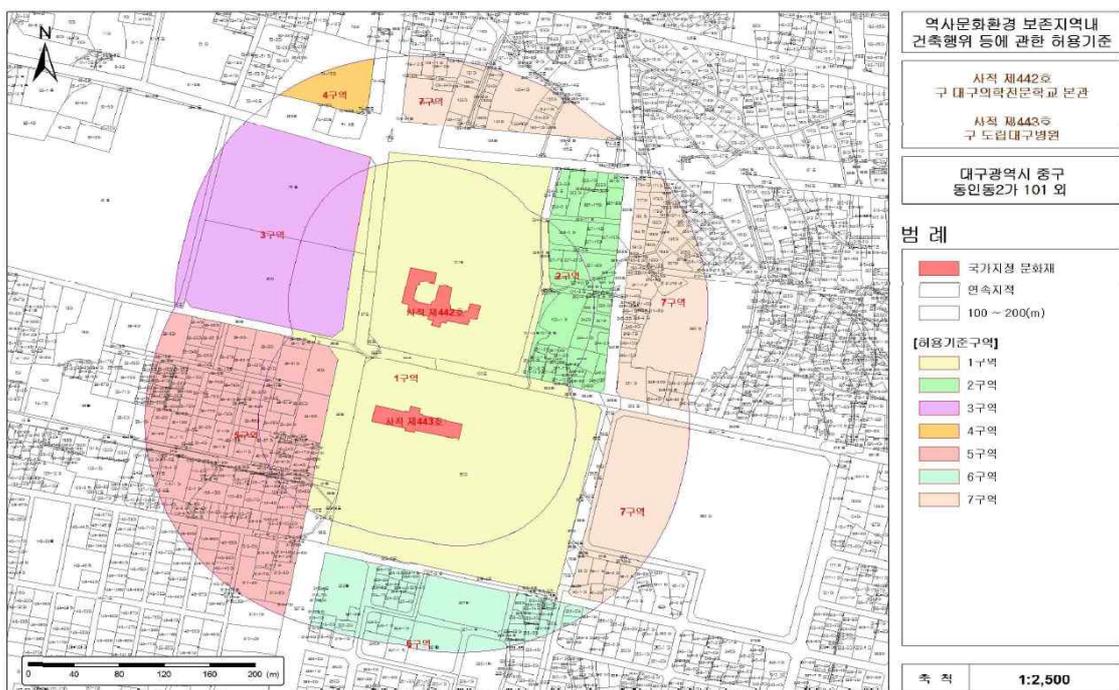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사적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독립대구병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광역시 중구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독립대구병원」
- (3) 조정 취지
 - 기존 고시된 사항이 도로 부분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지 않아 202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 시행
 -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2022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시행(보존정책과)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거쳐 내용반영
- (4) 세부내용
 - 주요 변경사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로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 구역 순서 정리
 -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로 변경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건축법 시행령)
 - 태양에너지 설비 관련 조항 신설
 - '개별심의'에서 '개별검토'로 용어 변경
 - 그 외 법률명 명확화 등 용어 정리
 - 향후 GIS 등재 시 구역 범주화: 1구역(개별검토), 2구역(고도제한), 3구역(타법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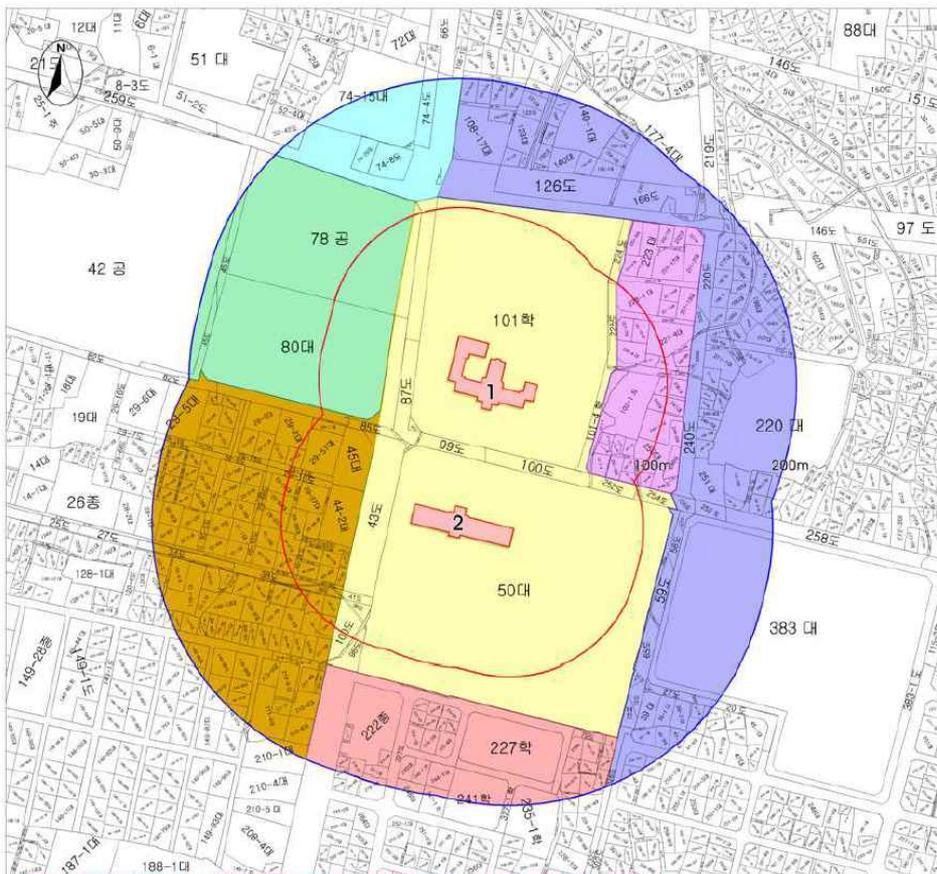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의구역 ○ 건축물 허용용도 : 학교(대학교), 의료시설(종합병원) 	
제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온실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 	
제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의구역 ○ 건축물 허용용도 : 공공용 시설 	
제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 	
제5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37M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온실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 	
제6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40M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온실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 	
제7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66M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검토 ○ 건축물 허용용도 : 학교(대학교), 의료시설(종합병원) 	
제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검토 ○ 건축물 허용용도 : 공공용 시설 	
제3구역	○ 최고높이 25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37m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40m 이하	
제6구역	○ 최고높이 50m 이하	
제7구역	○ 최고높이 66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대상문화재
 1.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사적)
 2. 구 도림대우병원(사적)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평인동2가 101외

■ 문화재구역
 문화재

■ 구역별 허용기준

항 목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10:3이상) 용 도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검토구역 ● 건축물 허용용도 : 학교(대학교), 의료시설(종합병원)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검토구역 ● 건축물 허용용도 : 공공용 시설 	
3구역	● 최고높이 25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37m 이하	
5구역	● 최고높이 40m 이하	
6구역	● 최고높이 50m 이하	
7구역	● 최고높이 66m 이하	
관 령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 표 적
 0 25m 50m 125m A3 : 1/2,500

* 본 도면은 실재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대반의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4. 사적 「서울 독립문」 등 2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사적 「서울 독립문」 등 2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사적 「서울 독립문」 등 2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각 문화유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독립문」 등 28개소

연번	명칭	연번	명칭
1	서울 독립문	15	구 공업전습소 본관
2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16	서울 이화장
3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17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4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18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5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19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6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20	안국동 윤보선가
7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대학원)	21	서울 경교장
8	만해 한용운 심우장	22	환구단
9	서울 용산신학교	23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10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24	서울 한국은행 본관
11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25	서울 약현성당
12	서울 우정총국	26	서울 정동교회
13	서울 대한의원	27	서울 명동성당
14	구 서울대학교 본관	28	구 서울역사

(3) 조정 취지

-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2022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시행(보존정책과)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거쳐 그 내용을 반영

(4) 세부내용

-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로 변경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
- 태양에너지 설비 조항 신설
- '개별심의'에서 '개별검토'로 용어 변경
- 그 외 법률명 명확화 등 용어 정리
- 향후 GIS 등재 시 구역 범주화: 1구역(개별검토), 2구역(고도제한), 3구역(타법처리)
※ 도면 변경 없음

라. 문화유산별 조정(안)

(1) 서울 독립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심의함.(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에 한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기존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 (2)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스관,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만해 한용운 심우장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6m 이하
제4구역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2m 이하	최고높이 16m 이하
제4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1,2구역)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서울 고종 어극 40년 청경기념비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제2구역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서울 우정총국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서울 대한의원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심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검토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9) 구 서울대학교 본관, 구 공업전습소 본관, 서울 이화장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0m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제4구역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제4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4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1) 안국동 윤보선거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4m 이하	최고높이 6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2m 이하	
제5구역	표고 30m 이상 - 최고높이 8m 이하 표고 50m 이상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촌지구단위계획,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3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최고높이 4m 이하	최고높이 6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2m 이하	
제5구역	표고 30m 이상 - 최고높이 8m 이하 표고 50m 이상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촌지구단위계획,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4,5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2) 서울 경교장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3) 환구단,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 한국은행 본관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심의	
제3구역	서울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2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4) 서울 약현성당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5) 서울 정동교회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심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2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6) 서울 명동성당, 구 서울역사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서울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속초 동명동 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재 「속초 동명동 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3.9.26.)를 거쳐 등록 예고한 「속초 동명동 성당」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속초 동명동 성당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로 7길 10-5(동명동 332)
 - 소유자 : ○○○○ ○○○○ ○○○○
 - 수량 : 1동(지상 1층)
 - 건립시기 : 1953년
 - 구조 및 규모 : 석재 조적조 및 목조트러스 지붕(280.20m²)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문화재청)
 - ('20.6.4.)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8.25.) :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등록 검토 '보류'
 - 추가 자료 조사 필요(내부 증축구조 및 지붕재 변화 등)
 - ('20.9.5.) :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등록 검토 결과 통보
 - ('21.8.27.) : 등록 검토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속초시 → 문화재청)
 - ('23.2.17.) : 등록 검토에 따른 추가 보완자료 제출(속초시 → 문화재청)
 - ('23.7.21.) : 관계전문가 보완조사 실시
 - ('23.7.24.)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증축부 건축물대장, 증축부 건축 재료 및 공사 관련자료 등
 - ('23.8.8.) : 보완자료 제출(속초시 → 문화재청)
 - ('23.9.26.)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등록 검토 '원안가결'
- (5) 등록예고 : '23.10.19. ~ 11.17. (30일간) * 의견 없음

6.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소장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자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3.6.27.)를 거쳐 등록 예고한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16건 19점	532×386 등	1925년~ 1933년	○○○○○	○○○○ ○○○ ○○○ ○○○○○○○○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0.4.~'10.11월) : '근대문화유산 음악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실시
 - ('22.9.7.) : 문화재 등록 신청(충청남도 → 문화재청)
 - ('23.4.2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3.6.27.) :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 '가결'
- (5) 등록예고 : '23.7.11.~8.10.(30일간) * 의견 없음

검 토 사 항

7. 「안국동 별궁 후원 전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안국동 별궁 후원 전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5.1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8.1.)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안국동 별궁 후원 전각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17(안국동 175-112)
 - 수량 및 면적: 1동, 건축면적 63.79㎡, 지상1층
 - 구조: 목조 기와 건축물
 - 시기: 1880년경 건립(추정)
- (3) 검토사항: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5.19.):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3.7.9.): 등록신청 서류 보완(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3.8.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3.8.7.): 보완자료 제출요청(문화재청→서울특별시)
 - 요청사항: 건축물 이력 및 관련 고증자료 등
 - ('23.9.11.): 보완자료 제출(서울특별시→문화재청)

8.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 소장 「디젤난방차 905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디젤난방차 905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3.31.)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3.8.31./9.1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디젤난방차 905호	1량	길이 1,300 높이 373.7 폭 300	1964년	○○○○○○	○○○○○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3.31.) : 문화재 등록신청(경기도→문화재청)
 - ('23.8.31./9.1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9. 「디젤동차 672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 소장 「디젤동차 672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디젤동차 672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3.31.)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 조사('23.8.31./9.1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디젤동차 672호	1량	길이 2,150 높이 373 폭 298.3	1963년	○○○○○○	○○○○○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3.31.) : 문화재 등록신청(경기도→문화재청)
 - ('23.8.31./9.1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10. 「안춘천 철교 상판 구조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 소장 「안춘천 철교 상판 구조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춘천 철교 상판 구조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3.31.)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3.8.31./9.1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안춘천 철교 상판 구조물	1량	길이 720 높이 230 폭 300	1906년	○○○○○○	○○○○○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3.31.) : 문화재 등록신청(경기도→문화재청)
 - ('23.8.31./9.1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11.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舊)」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소장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舊)」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舊)」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4.3.)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9.15.)를 실시하였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舊)	6량	길이 105 폭 2.78 높이 3.67	1984년	○○○○○○	○○○○○ ○○○ ○○○○ ○○○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4.3.) : 문화재 등록 신청(부산광역시 → 문화재청)
 - ('23.9.15.)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12.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4」 보수정비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4」의 보수정비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2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4」 보수정비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영덕군수
- (2) 대상문화재명: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4」(19.11.04. 등록)
 -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666-7
- (3) 검토사항
 - 건축물 일부 철거(등록면적 조정)

구분	등록면적	현황 실측 (연)면적	보수정비계획 (연)면적	비고
근대상가주택4	89.3㎡	82.24㎡	69.48㎡	철거·조정

보고 사항

13.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등록(면적) 정정 고시 보고

가. 보고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의 등록 면적을 정정하여 고시('23.11.24.)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 (1) 대상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18.5.8. 등록)
- (2) 처리내용: 등록 정정 고시('23.11.24.)
- (3) 정정사항: 등록 면적

지번	지목	대지면적(m ²)	등록면적(m ²)	
			당초	정정 후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1123	대	622.3	338.1	422.5

- (4) 정정사유: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등록 면적 현행화

- (5) 사전 서면검토

- ('23.11.17.)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의 등록 면적 정정 고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실시